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5일, 안철수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4.8.2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9.4.)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안철수 의원)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를 세울 때 식량자급률을 설정·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보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적정 수준의 식량자급률을 유지하는 것은 한 주권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안정에 밀접히 결부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로 목표치 달성 기간을 연장하거나 목표 자체를 하향 조정하는 등 식량자급률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게다가 식량공급의 기반이 되는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식량자급 목표의 달성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보전 정책의 수립 목적에 각각 식량안보의 확보와 식량자급률의 달성을 명시함으로써 농지가 식량안보 등과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보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세계는 2022년을 전후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으로 곡물 가격 상승은 물론 각국의 식량수출 제한조치에 따른 식량 공급 차질 사

태를 겪은 바 있음.

이에 따라 식량자급률 향상을 비롯한 식량안보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었으며, 식량안보의 확보는 물론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적정 농지의 확보가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안정과 밀접하게 결부된 사안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현행법에 따르면 농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식량 등의 자급목표를 수립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에 따르면 17년까지 자급 목표는 57%였으나, 2022년까지 55.4%로 하향 조정된 이후 2027년까지 55.5%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실제 식량자급률은 매년 50% 내외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농지 면적의 감소가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농지 면적과 농지가 전체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식량 등의 적정한 생산기반으로서 농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농지 이용 증진 정책 및 보전 정책의 목표에 식량안보의 확보와 식량자급률의 달성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의 ‘식량안보’라는 용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등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음